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

2022. 11. 29.(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	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원)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동원)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2.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129호

나. 제 출 자 : 차해영 의원 외 9명

다. 제출일자 : 2022. 11. 22.

라. 회부일자 : 2022. 11. 24.

3. 제안이유

스토킹을 미연에 방지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필요성이 나날 이 증대되는 시기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3조 ~ 제4조)

다. 협력체계의 구축 등과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 제6조)

라. 비밀누설의 금지와 시행규칙(안 제7조 ~ 제8조)

5. 주요 토의 과제

없음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나. 조 례 안 : 붙임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2. 11. 18. ~ 11. 23.

7. 검토의견

가. 제안경위

- 본 제정조례안은 2022. 11. 22. 마포 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 22-129호로 제출되어, 2022. 11.24.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제정 배경은 나날이 늘어나는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를 미연에 예방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의견

(1)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여 위반 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스토킹에 대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책무가 대두됨 ○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21개 지방자치단체서 조례를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 방지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의 경우 여성·청소년 안전귀가 서비스인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등과 함께 2023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구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 하겠음.

(2) 조례 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명시와 정의를 규정하였 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과 교육 및 홍보 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와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주요조문 검토사항으로

-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서 스토킹 예방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3항의「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시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안 제4조 지원사업 추진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우리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2021년 10,000천원, 2022년 32,000천원의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 하고 있기에 조례 제정과 함께 최소한의 구비 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안 제8조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규칙도 함께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 의견

O 이상의 제정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의 규정이고현재 근거 법령이「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기타자료

가.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 억워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안심장비 지원사업 예산 현황(전액 시비)
 - 2021년 10,000천원, 2022년 32,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조현욱
연 락 처	02-3153-8924

나. 소관부서 의견(가족행복지원과)

구 분	조례안 사전검토 의견
법령상 검 토	 ○ 스토킹범죄 관련 법령으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 처벌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거법령 성격을 지니고 있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령안이 2021.11.11. 입법예고 후 국회 계류 중
예산상 검 토	○ 해당사항 없음
행정적 검 토	○ 실태조사를 위한 스토킹범죄 정보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제공 곤란
조 문 수 정	○ 별첨
기 타 사 항	0

검토자 가족행복지원과 : 과장 이재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8921), 주무관 조현욱(8924)

다. 관련 법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11. 8〉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

-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 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정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하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2. 스토킹 신고체계 및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운영
 - 3. 스토킹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법률, 주거,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 5.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및 진행현황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0.17. 제정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행(2023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사업 추진 중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업 (CCTV 모니터링 및 안심장비 지원) 지속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양천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연계 등 안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2023년 예산에 반영, 경찰과 MOU 안심장비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예정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3년 예정 안심홈도어 사업 추진 계획 (구비)
8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2	성남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3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4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5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6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8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9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19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8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9	경기도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19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21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 회부(9.16)